

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(융자)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, 구인난 등으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

□ 지원대상

- 농업인(가족포함)이 감염 확진 또는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
-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
- 이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
※ 화훼, 학교급식 납품, 수출이 어려운 농가(단순 소비 부진은 인정하지 않음)

□ 지원기준

- 지원기준 :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
- 지원한도 : 농가당 최대 5천만원
 - * 대출 가능금액 :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
- 대출조건 : 고정(1.8%) 또는 변동금리('20.3월 기준 1.21%, 6개월 변동)
- 대출기간 : 1년(1년 연장 가능, 과수농가 3년)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0. 3. 18. ~ '코로나19' 상황 안정 시까지
- 신청장소 :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절차



- 제출서류 : 신청서, 피해내용 사실 확인서(이장확인서, 학교급식 납품 계약서 등)

※ 문의 : 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과 소득창출담당(☎061-390-8428)